

백제 공복제도에 관한 연구

서 미 영

하와이대학교 객원 연구원

A Study of the System of Official Costume of Baekche

Mi-Young Suh

Visiting Scholar of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06. 4. 12 투고)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aekche official costume system, including the dress, cap and belt systems, by relating documentary records with the results of excavations. The study shows that the system differed depending on the time. A system of dress based on official ranks was instituted during the region of King Goi in the third century. The cap and belt systems were begun in the first half of sixth century. The official costume system, as recorded in the Chinese history *Susō*, included many subdivisions of cap colors, which followed belt colors. According to *Gudangsō*, dress and cap systems changed in the seventh century. The official costume consisted of a jacket(*jōgori*), trousers(*baji*), and coat(*po*). The coat had wide sleeves and reached below knees. Its collar had straight neckline. Officials of all rank wore silk caps and belts of matching colors. Officials above sixth rank used silver flower decorations on their caps. Officials wore wide-crouch trousers and generally adjusted the hems of the trousers, but this practice stopped in the sixth century. Officials wore shoes or boots depending on occasion. From a historical viewpoint, Baekche is important for having been the first Korean kingdom to establish a government organization. The salient feature of the system of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D. 260(the twenty-seventh year of the region of King Goi) was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colors to identify different ranks.

Key words: Baekche(백제), system of official costume(공복제도), costume(복식)

I. 서론

한 사회의 일면으로서 복식은 인간이 생활했던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생활양식의 표현이다. 따라서 복식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여러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복식과 관련된 복식제도는 그 사회의 구성과 발전 정도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 특히 공복제도는 한 나라의 지배계급의 복식 착용을 규제하는 법으로 정치체제의 정비 정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정해진 공복제도는 정치적 위계질서를 세우는 일면으로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복식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인 구별을 뚜렷이 하였다. 이는 고대 국가에서 복식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공복제도를 정하였다. 이는 백제가 고대 국가로서의 정비를 가장 빠르게 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바이다.

백제는 夫餘系의 고구려 流移民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다. 백제 전반기에는 樂浪·帶方과 접촉이 빈번하였고, 후반기에는 중국의 南朝와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독자적인 국가체제와 문화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백제가 삼국 중에서도 한반도의 중심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국가이며, 외국과의 교류 또한 빈번하여 문화적으로 발달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획을 그치고 있는 백제가 다른 나라보다 가장 이른 시기에 정비했던 공복제도에 대해 그 제정 시기나 내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의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제 복식관련 문헌 기록과 기간 진행된 발굴 결과를 토대로 백제 공복제도의 내용을 衣制·冠制·帶制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시행 시기, 복식의 형태 등을 분석하여 이른 시기부터 공복제도를 제정한 국가로서 한국 복식사에

서의 백제 복식에 대한 복식사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복식관련 서적, 역사서적과 발굴 보고서, 선행 연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공복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서 고대 관리가 입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제정한 복식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 조복·제복·공복·상복의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또한 공복제도에서 의제는 의복의 색에 관한 내용, 관제는 관모의 색과 수식에 관련된 내용, 대제는 대의 색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II. 백제 공복제도의 내용

백제 공복제도 관련 내용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사서의 내용을 보면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들 사료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 사서에 기록된 백제 공복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문헌

우리나라 사서로 백제 공복제도에 관련된 기사는 『삼국사기』¹⁾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그 편찬 시기가 후대이긴 하나, 백제복식 관련 기사가 있는 삼국시대 한국 문헌으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백제복식 파악에 있어서도 사료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백제복식 관련 기록이 있는 다른 한국 문헌은 『東國通鑑』²⁾·『東史綱目』³⁾·『增補文獻備考』⁴⁾ 등인데, 이 서책들은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후대의 사서로 그 내용은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1) 『삼국사기』의 백제 공복제도

『삼국사기』에 의하면⁵⁾ “6품 이상은 紫色의 옷을

입고 銀花飾冠을 하며, 11품 이상은 緋色의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靑色의 옷을 입는다.”고 한다. 이는 고이왕 27년(260) 때의 기록으로 그 당시 신분에 따른 복식제도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이왕대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공복제도는 衣制와 冠制로 나눌 수 있다. 衣制는 관위에 따라 紫·緋·靑의 색상으로 구별되고, 冠制는 6품 이상의 고위 관인은 관에 은화관식을 꽃았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문헌

백제 복식에 관한 기록은 소략적이긴 하나 한국 문헌보다 중국사서에 더 많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중국사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백제인의 복장으로 중국인들과 다른 특징적인 것만을 기술하였거나, 극히 일부분의 관찰만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유물사료로 가장 중요한 고구려 고분벽화도 그 상한 연대는 3세기 이상을 소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시대는 물론, 신석기시대 이래 수 천 년간의 복식생활사는 아직도 안개 속이나 다름 없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사서는 백제복식에 관한 한국문헌이 희소한 가운데 그나마 추정해볼 수 있는 얼마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도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사서의 백제 공복제도 관련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사서 중 『通典』은 『周書』나 『北史』를 인용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서에 백제 공복제도 관련 기사가 있는 사서는 『周書』·『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 등으로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아래 <표 1>의 백제복식 관련 내용을 분류해 보면 『周書』·『北史』·『隋書』의 내용과 『舊唐書』와 『新唐書』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1) 『주서』·『북사』·『수서』의 백제 공복제도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6품 이상의 고위 관인은 관에 은화관식을 꽃았다.”는 백제 공복제도의 冠制가 중국사서에서도 확인된다. 『주서』·『북사』에는 은화관식을 꽃지 못하는 7품 이하의 관위에 해당되는 관인들의 帶制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대제의 내용은 “장덕은 7품인데 紫帶, 시덕은 8품인데 皂帶, 고덕은 9품인데 赤帶, 계덕은 10품인데 靑帶, 대덕은 11품·문독은 12품인데 다 黃帶를 한다. 무독은 13품·좌군은 14품·진무는 15품·극우는 16품인데 이들은 모두 白帶를 한다.”는 것이다. 『수서』는 『주서』·『북사』와는 다르게 1품에서 7품에 해당되는 관인이 모두 紫帶를 매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관품에 해당되는 대의 색은 두 사서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수서』에는 대제 바로 뒤에 관제에 대해 “그 관제는 대제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 冠의 색이 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冠制에

<표 1> 중국사서의 백제 공복제도 관련 기사

문헌	백제복식 관련 내용
『周書』 列傳41 百濟 (618~628년)	六品以上冠飾銀華 將德七品紫帶 施德八品皂帶 固德九品赤帶 季德十品靑帶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皆黃帶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皆白帶.
『北史』 列傳83 百濟 (627~659년)	官有十六品 左平五人一品 達率三十人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杆率五品 柰率六品 以上冠飾銀華 將德七品紫帶 施德八品皂帶 固德九品赤帶 季德十品靑帶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皆黃帶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剋虞十六品 皆白帶 自恩率以下官無常員
『隋書』 列傳46 百濟 (629~636년)	官有十六品 長曰左平 次大率 次恩率 德率 次杆率 次柰率 次將德 服紫帶 次施德皂帶 次固德赤帶 次季德靑帶 次對德以下皆黃帶 次文督 次武督 次佐軍 次振武 次剋虞 皆用白帶 其冠制並同 唯柰率以上 飾以銀花
『舊唐書』百濟 (940~945년)	官人盡緋爲衣 銀花冠飾 庶人不得衣緋紫.
『新唐書』 列傳145 百濟 (1044~1060년)	羣臣絳衣 飾冠以銀鸞 禁民衣絳紫.

대해 기록되어 있다.

2) 『구당서』·『신당서』의 백제 공복제도

『구당서』와 『신당서』에 실려 있는 백제의 공복제도는 “관인은 緋色(絳色) 옷을 입고 銀花로 冠을 장식하고, 서민은 緋色(絳色)과 紫色 옷을 입지 못한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衣制와 冠制를 알 수 있는데 관위의 구분 없이 모든 관인이 붉은 색으로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은화관식을 관에 꽃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 공복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는 모든 사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Ⅲ. 백제 사신의 복식형태

백제의 공복은 귀족계급에 해당되는 복식으로 현존하는 자료는 없으며 그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제 사신도의 회화 자료뿐이다. 외국에 사절로 간 사신이 백제의 관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사신의 복식을 통하여 관인 복식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6세기에 백제에서 梁에 내조했던 사신의 모습은 『梁職貢圖』에 묘사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양과 백제와의 교류관계는 백제 무령왕과 성왕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공도에 표현되어있는 백제 사신은 바로 무령왕과 성왕 재위시인 6세기 전반기의 복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 그렸던 원본이 아닌 모사본으로 북경 역사박물관 소장 『梁職貢圖』, 고궁박물관 소장 『王會圖』와 『蕃客入朝圖』 등이 남아 있다. 세 가지 모두 모사본이지만 유일하게 백제 사신의 복식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복제도에 관한 내용이 주로 복색에 관한 것이므로 복식의 색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양직공도』와 『왕회도』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로 사용된 사신도는 사진을 이용하여 현재 보이는 그림의 색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본래의 색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탈색되거나 변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신도가 백제 관인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화 자료이므로 현재 보이는 색을 근거로 분석

<표 2> 백제의 공복제도 비교

品階	官位	三國史記 (古爾王代)		周書 · 北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	
		衣色	冠	帶色	冠	帶色	冠	衣色	冠	衣色	冠
1	佐平	6人 紫服	銀花飾冠	5人	冠飾銀華	紫帶	飾以銀花	緋衣	銀花飾冠	絳衣	飾冠銀礪
2	達率			30人							
3	恩率										
4	德率										
5	杆率										
6	柰率										
7	將德	緋服		紫帶	冠制並同	白帶					
8	施德			皂帶							
9	固德			赤帶							
10	季德			青帶							
11	對德			黃帶							
12	文督										
13	武督	靑服		白帶		白帶					
14	佐軍										
15	振武										
16	克虞										
庶人								不得緋紫		禁絳紫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백제의 공복 제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양직공도」
백제사신⁷⁾



〈그림 2〉「왕회도」
백제사신⁸⁾

1. 사신의 상의와 대의 형태

사신은 무릎을 덮는 정도의 상의를 입고 있다. 이 상의를 袍로 볼 것인지 아니면 長襦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석명』에 “포는 남자가 입었는데, 아래로 길게 늘어져서 발등을 덮고 속옷을 감싸는 옷이다”라고 되어 있고,⁹⁾ 또한 사신도에 포를 여민 안으로 內衣의 여밈이 보이지 않아 長襦를 입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볼 때 포는 발등까지 닿는 길이로 생각하여 그보다 짧은 백제의 포를 長襦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백제의 의복 관련 기록에서 ‘衣似袍’라고 하는 것 또한 중국의 포에 비하여 길이가 짧았던 백제 상의를 일컬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포의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이르는 것이 저고리와와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데,¹⁰⁾ 무릎 아래에 닿는 길이의 상의를 ‘포’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신이라는 직책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외국에 파견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춘 복식을 착용했을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사신이 입고 있는

상의는 기본 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고리와 바지 위에 예의를 갖춘 중국의 포보다는 길이가 짧은 백제의 포를 착용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양직공도」〈그림 1〉의 사신이 입은 포는 直領右衽으로 느슨하게 여며졌다. 푸른색의 포에 같은 색의 띠를 매었는데, 대는 길이가 포의 길이보다도 훨씬 내려와 바지 밑단에 이르고 있고 늘어진 모습으로 보아 직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장식으로 깃·수구·밑단에 넓은 선을 들렀다. 깃 부분의 선이 허리선을 경계로 아래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공수하고 있는 팔에 가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앞단의 선 장식 유무를 단정하기가 어렵다.

「왕회도」〈그림 2〉의 사신은 「양직공도」와 마찬가지로 빛깔에서 차이는 있지만 푸른색의 포를 직령우임으로 입고 있고 길이가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며, 깃·수구·밑단에 선장식을 넓게 대었다. 앞단은 「양직공도」 사신의 포와 같은 형태로 앞단에는 선장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허리에는 바지와 같은 黃色의 띠를 매었다. 대를 맨 길이는 바지 길이와 같고 직물로 만들어진 것 같다. 포의 양쪽 어깨 부위에는 견장과 같은 형식의 장식문양이 들어가 있다. 문양의 형태는 불교 팔보문의 白蓋문양과 유사하다. 이 양쪽 어깨 부분에만 문양을 표시한 것은 계급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의 추정일 뿐, 사실을 확인할 바가 없다.

위의 두 사신도에서 모두 사신은 상의로 푸른색의 포를 직령우임으로 허리에 대로 여며 입고 있다. 대의 색은 「양직공도」에서는 포의 색과 같고, 「왕회도」에서는 바지의 색과 같은 색으로 두 그림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사신의 관모 형태

「양직공도」에 있는 백제 의복 관련 기록은¹¹⁾ 『양서』 백제조의 내용과¹²⁾ 대동소이하다. 「양직공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백제의 사신〈그림 1〉은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관모에는 2줄씩 끈이 측면에 달려서 중간에 귀를 내놓게 하고 턱 밑에서 매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모의 색은

바지보다 옅은 색으로 보인다.

「왕회도」〈그림 2〉에 보이는 백제사신 또한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어 흑색의 관모를 착용하였는데 끈이 달려 있어 턱 밑에서 묶었다. 관모의 형태는 정형화되지 않고 앞에서 뒤쪽으로 조금 늘어진 것으로 질풍을 쓴 것과 유사하다.

「양직공도」의 사신이 쓰고 있는 관모에 대해 홍사준은 “관 앞에 두 개의 관식을 꿸고 있으며 앞이마 위로는 차양을 단 듯한 관”이라 하였는데,¹³⁾ 그 형태의 확인은 관모의 앞부분이 지워져 확인할 바가 없다. 그러나 백제 사신의 관모는 「왕회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질풍 형태의 관모를 쓰고 끈으로 턱 아래에서 묶어 고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모의 색은 두 그림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옅은 색과 검은 색 중 어느 한 가지 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사신의 하의 형태

「양직공도」〈그림 1〉 사신의 바지는 옅은 黃色으로 밑단에 붉은 색의 선을 둘렀다. 바지는 밑단이 넓게 트여있어 매우 헐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은 흑색의 靴를 신고 있다.

「왕회도」〈그림 2〉의 사신은 밑단은 붉은 색의 선이 넓게 대어진 비교적 통이 넓은 황색의 바지를 입고 있다. 신발은 흑색의 화를 신고 있다.

두 그림에서 바지는 모두 붉은 색 선 장식이 넓게 대어있고 밑이 트인 통이 넓은 황색바지를 입고 있으며 흑색의 화를 신고 있다.

4. 백제 사신의 복색과 공복제도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공복제도의 의제와 대제에 서는 주로 그 내용이 색상에 관한 것으로 「양직공도」와 「왕회도」 백제 사신복식의 의복과 대의 색상을 통하여 공복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衣制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관위에 따라 紫·緋·靑의 세 가지 색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서 모든 관인이 緋나 綠의 붉은 색 한 가지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 衣의 색은 上衣인 포의 색을 기준으로 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두 회화에서 사신이 입고 있는 포의 푸른색은 靑色에 해당된다. 이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신도가 그려진 6세기에는 『삼국사기』의 내용과 같은 의식에 차이를 두는 공복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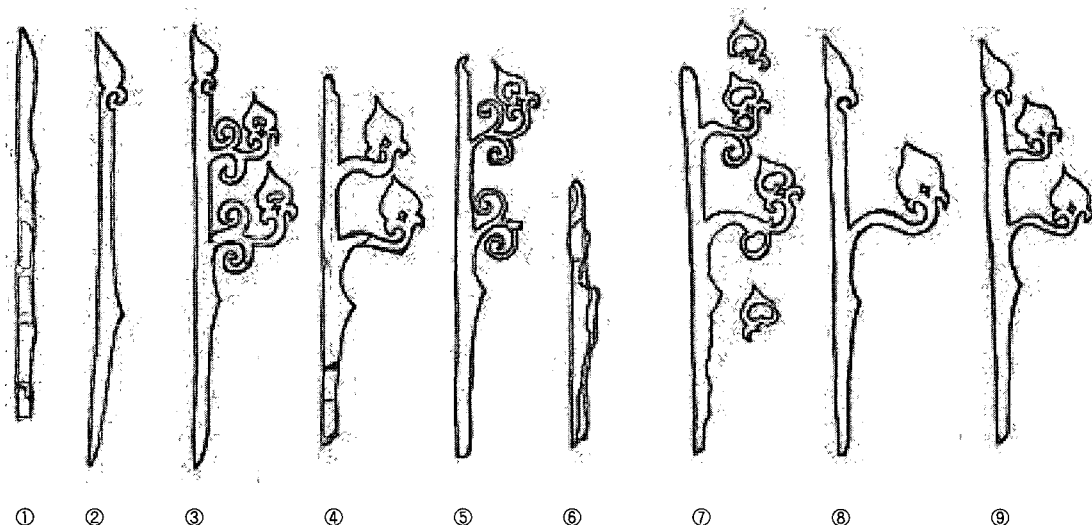
다음으로 冠制를 보면 『수서』에 대제의 색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6품 이상은 관모에 은화관식을 더하였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두 회화에서 모두 관모의 색과 대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 관모의 색이 대의 색을 따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6품 이상의 고위 관인에 해당되는 은화관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끝으로 帶制에 관하여는 『주서』·『북사』·『수서』에 관위에 따라 紫帶·皂帶·赤帶·靑帶·黃帶·白帶를 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신의 대색을 살펴보면 「양직공도」의 사신은 청대를 매고 있으며, 「왕회도」의 사신은 황대를 매고 있다. 여기에서 대색을 청대 또는 황대로 표현하여 관위에 따른 대제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회화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른 대색을 적용함으로써 공복제도의 서로 다른 관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서의 기록에서 靑服에 해당되는 대제의 색은 황대 또는 백대이다. 「양직공도」의 사신은 청복에 청대를 매어 사서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며, 「왕회도」의 사신은 청복에 황대를 띠어 보다 더 사서의 기록에 부합된다.

이로써 보면 6세기대의 공복은 「양직공도」와 「왕회도」의 사신복과 같은 형태였으며, 색으로 관위를 구분하는 의제와 대제의 복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신도를 통하여 대의 색과 동일한 관모의 색과 은화관식의 관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공복제도와 은제관식

공복제도와 관련된 출토물은 현존하는 의복이 없으므로 冠制와 帶制에 해당되는 관식과 과대 장식 뿐이다. 이 중에서 공복제도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은제관식은 관제의 제정 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과대장식은 공복제도에



〈그림 3〉 백제 은제관식¹⁾

① 능산리 44호분 ②,③ 능산리 36호분 ④ 남원 척문리 ⑤ 부여 하황리 ⑥ 나주 흥덕리 ⑦,⑧ 나주 북암리 ⑨ 논산 육곡리

대의 색상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소재나 형태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복제도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예외로 하였다. 그리하여 출토된 은제관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은제관식의 형태

『주서』 백제조에 는 1품에서 6품에 해당하는 관인들이 관에 장식했던 은화식이 등장하는데, 이 유물은 흥덕리·북암리·척문리·육곡리·하황리·능산리 등에서 출토된 총 9점〈그림 3〉이 있다. 이들의 은제 관식은 기본적 構圖 형태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하다. 이들 중 原狀의 모형을 알려 주는 것은 육곡리 7호분과 능산리 36호분 출토 관식이다. 은제 관식이 학술발굴조사에 의하여 출토된 것으로는 육곡리에서 조사된 백제 고분이 시초로 알려졌다.

육곡리 출토 관식〈그림 3-⑨〉은 두께 0.06cm의 銀板을 접어 透刻으로 문양을 조성한 형태이다. 모양은 반으로 접힌 기본 줄기를 18cm 높이로 만든 후, 좌우에 각기 2개씩의 花枝를 낸 후 끝부분에 花峯 형태의 초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봉은 기본줄기의 상단에도 반으로 접힌 형태로 표현하여 모두 5개의 화봉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반으로 접

은 기본 줄기는 줄기의 하단에서 7cm의 높이에 돌기 형태를 돌출시키고 있으며 9cm, 12.5cm의 높이에서 각각 좌우로 작은 화지를 전개하고 있다.¹⁵⁾ 능산리 36호분 출토 관식〈그림 3-③〉은 동편시신에서 수습된 것으로 두께 0.03~0.035cm의 은판으로 만들어졌고 줄기부분 길이는 20.2cm이며,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가 육곡리의 관식과 동일하며 은판을 반으로 접은 각도는 50°정도이다.¹⁶⁾ 이외 남원 척문리〈그림 3-④〉,¹⁷⁾ 부여 하황리〈그림 3-⑤〉, 나주 북암리〈그림 3-⑦, ⑧〉 등의 관식도 양식상 육곡리와 능산리 36호분 출토 관식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나주 흥덕리〈그림 3-⑥〉나 능산리 44호분 출토 관식〈그림 3-①〉은 파손이 심하나 잔존한 부분에서 2쌍의 문양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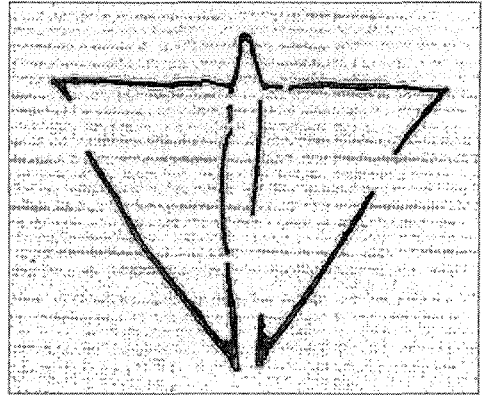
이상의 은제관식은 기본 문양이 초화형으로 크기와 형태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그 문양을 자세히 보면 화봉의 안을 파낸 부분이 크거나 작은 차이가 조금씩 있다. 다른 고분과는 달리 능산리 36호분에서는 하나의 은제 관식〈그림 3-②〉이 더 출토되었는데 서편 시신에서 수습된 것으로 같은 무덤의 동편의 것〈그림 3-③〉에 비해 구성도 단순하고 크기도 다소 작으며 다만 상단부쪽에는 화염문

이나 만개하지 않은 꽃봉오리와 유사한 형태로 오래 이 부분만은 동편의 것과 닮았고, 2쌍의 인당초문 장식은 없다. 즉 중앙부인 幹部로만 구성된 단순한 모양으로 구성된 것이다.¹⁸⁾ 이처럼 줄기에 당초문과 같은 가지부분이 생략된 약식 양식은 다른 출토의 예가 없으므로 이러한 약식 관식이 남편의 官位에 따라 사용된 여성들의 장신구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무덤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관식의 주인공이 왕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출토유물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은제 관식은 주로 벼슬 당사자인 남성들만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그리고 은화식의 구조가 거의 동일하나 화봉이 5개가 아닌 3개인 것도 출토되었고 화봉안에 투각한 부분의 크기와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6품내에서도 화봉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계급구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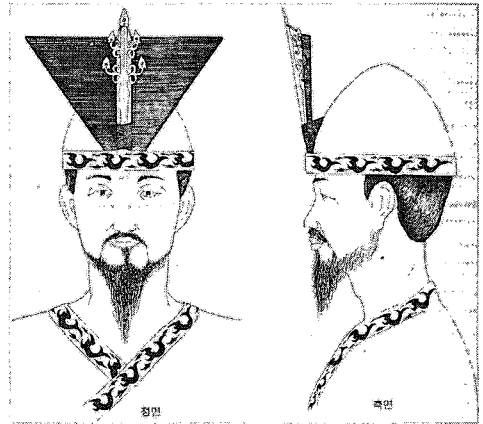
2. 은제관식의 수식방법

능산리 36호분과 53호분에서는 머리 윗부분에서 철제 삼각형의 심<그림 4>이 출토되었는데 이 철심의 중앙부에 은제 관식이 그대로 놓여 있어 은제 관식을 꽂았던 관모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유물을 통해 백제 관인들의 관에 은화식을 꽂은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철제 삼각형 모자심은 철사로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상단쪽에서 연결된 철사로 ㄷ자형으로 구부려 前上面을 향하게 서로 뻗질기법과 같은 것으로 이은 것이다. ㄷ자형은 앞쪽으로 향하되 약간 위쪽으로 치켜세워 각도는 117°를 유지하고 있다. 모자심의 각 철사 부분에는 율이 크고 작은 천으로 말아 감고 바느질로 꿰맸다. 감겨진 직물은 두 가지로 얇은 천과 두꺼운 천을 반복하여 겹치고 있는데 율이 두텁고 넓은 천은 삼베이고 얇고 고운 천은 견이다. 여기서 “왕은 오라관에 금화장식을 하고, 6품 이상 관인은 은화장식을 한다.”고 했던 『삼국사기』의 기사²⁰⁾와 부합되게 羅로 만들어진 관모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철제 심은 높이 3cm정도로 당시 은제 관식을 꽂기 위하여 이러한 철제 심을 넣은



<그림 4> 은제 삼각형 관모심²¹⁾



<그림 5> 관모 추정도²²⁾

앞 쪽에는 관식을 세워 달았던 형태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모상으로도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은제관식의 수식방법<그림 5>은 가장 아랫면에서 삼각형 철심 사이에서 끼워 넣어진 채 1차 고정되고 상단쪽의 ㄷ자형 철심 내에 은제 관식을 넣어 다른 고리나 끈 등으로 다시 한 번 고정을 하게 됨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²³⁾ 이러한 은제관식과 철제 모자 심에 의한 백제 관인의 관모를 추정해 본 결과 弁形帽의 앞에 삼각형의 관모심을 붙이고 거기에 은화식을 꽂은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²⁴⁾ 고구려 개마총 주인공은 이와 유사한 관모에 금제 또는 은제의 관식을 꽂고 있으

며, 신라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의 관모도 같은 형태라고 생각되나 관식은 보이지 않는다.

은제관식이 출토된 고분은 횡혈식 平天井의 유형인 점을 근거로 입점리 고분이나 무령왕릉보다 늦은 시기인 백제의 웅진도읍 말기에서 사비도읍기 이후인²⁵⁾ 6세기 중엽 이후의 시기로 편년될 수 있겠다.

V. 공복제도 시행시기와 형태 분석

1. 중국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시기

공복제도의 제정 시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백제의 기사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사서의 내용을 보면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들 사료는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사서의 백제 관련기록의 내용연대와 편찬연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위 <표 3>에 의하면 백제 공복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주서』·『북사』·『수서』는 백제의 6세기 후반기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며, 『구당서』와 『신당서』는 7세기에 해당되는 백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공복제도의 시행시기

공복제도 시행시기를 보면 백제에 관한 사서가 반드시 서술의 주대상으로 삼는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만을 다루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삼국사기』의 내용이 모두 當代의 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서』의 기사가 北周代의 백제 또는 『구당서』의 기사가 唐代에 해당되는 백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

<표 3> 중국문헌의 내용연대와 편찬연대¹⁾

문헌	내용연대	편찬연대
『後漢書』	後漢(25-220) 韓	南朝 宋의 范曄(398-445)이 편찬
『三國志』	三國(魏:220-265) 韓	西晉 太康年間(280-289)
『晉書』	西晉(265-316) 東晉(317-418)	唐 太宗 貞觀 18-20년간(644-646)
『魏書』	北魏-東魏(386-550) 백제(472-475)	北齊 文宣帝 天保 2-5년간(551-554)
『梁書』	梁(502-557) 백제(346-549)	唐 太宗 貞觀 3-10년간(629-636)
『周書』	北周(557-581) 백제(B.C.18-A.D.578)	唐 高祖 武德年間-唐太宗 貞觀2년(618-628)
『南史』	南朝 (宋·齊·梁·陳:420-589) 백제	唐 太宗 貞觀 원년-23년간(627-649)
『北史』	北朝(北魏·北齊·北周·隋:386-618) 백제	唐 太宗 貞觀 元年-高宗 顯慶 4년(627-659)
『隋書』	隋(581-618) 백제	唐 太宗 貞觀 3-10년간(629-636)
『舊唐書』	唐(618-907) 백제	五代 後晉의 天福 5년-出帝 개운 2년(940-945)
『新唐書』	唐(618-907) 백제	宋 仁宗 慶歷 4년-嘉祐 5년(1044-1060)

이 다른 중국 사서에는 없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 어느 정도는 동시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복사』와 『수서』의 내용은 『주서』를 답습하고 있고, 『신당서』는 『구당서』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²⁶⁾ 『주서』와 『구당서』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동시대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서의 내용과 출토물을 고려하여 백제 공복제도의 제정 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제의 시행시기

『삼국사기』에는 紫·緋·靑·3색의 관위 서열에 따른 服色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사서에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 어느 사서에도 없는 내용을 적고 있다는 것은 『삼국사기』가 古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짐작되며, 관위에 따른 의색의 차이는 사신의 衣色이 청색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실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위 1품 좌평은 『주례』 6관에서 취한 용어로서 주례주의적 정치이념의 채택과 관련 있는 것으로,²⁷⁾ 주례에 나타난 五色을 받아들여 복식 제도를 정비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관등과 복색을 보면 1품 좌평에서 6품 내솔까지의 복색은 紫服이었고, 7품 장덕에서 11품 대덕까지는 緋服, 13품 문독에서 16품 극우까지는 靑服이었다. 이러한 백제 공복제도의 색은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에 따른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는데,²⁸⁾ “紫·緋·靑·黃의 순으로 6부 사람들의 복색 준비제도를 정하였지만, 오히려 東夷의 풍속 그대로였다.”²⁹⁾고 한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 공복제도의 의제는 복색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官品에서 緋 또는 絳의 한 가지 색만을 나타내고 있다. 『구당서』에서는 緋로 기록된 것이 『신당서』에서는 絳으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보면, 緋와 絳은 모두 붉은 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등에 따른 복색이 붉은 색 한 가지로 통일되어 7세기의 백제는 그 이전 시대보다 공복제도가 단순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구당서」와 「신당서」는 다른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반인의 복색에 대한 紫와 緋의 禁制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백제 복식에 관한 금제 사항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다. 관인의 복색이 모두 붉은 색인데 紫色을 같이 금한 것을 보면 이 당시 紫色은 왕이 입었던 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衣色을 정한 의제의 성립은 3세기 고이왕대에 紫·緋·靑으로 정해져,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신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6세기대에도 지속되다가 『구당서』 편찬의 중국 당대에 해당되는 7세기에는 붉은색 한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일반 서민들과는 확실한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 관제의 시행시기

백제 공복제도의 관제에 대한 기록은 한국의 사서인 『삼국사기』는 물론, 중국사서인 『주서』·『복사』·『수서』·『구당서』·『신당서』에서 확인된다.

‘6품 이상 은화관식’이라는 동일한 내용이 『삼국사기』는 ‘銀花冠飾’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서』·『복사』에는 ‘冠飾銀華’, 『수서』에는 ‘飾以銀花’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을 통하여 본다면 3세기 백제 고이왕대에 은화관식의 관제가 시행되어 『신당서』의 7세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화관식 출토물이 무령왕릉보다 후의 6세기 중엽 이후의 무덤에서만 출토되어 고이왕대에 은화관식의 관제가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은화관식의 관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은화관식 출토 유물의 시기를 실제 공복제도에 적용된 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은화관식의 관제 시행은 무령왕릉 이후인 6세기대에 성립되어 『주서』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삼국사기』 고이왕대의 의제에 대한 기록에 덧붙여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수서』의 관위에 따른 대색과 같이 관모의 색을 따랐다는 내용은 실재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백제 사신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주서』에도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수서』의 6세기말 백제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6세기에 고위 관인만이 착용했던 은화관식에 관하여 모든 관인이 은화관식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의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제도 관위구분이 없어져 7세기에 단순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대제의 시행시기

백제 공복제도의 대제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그 기록이 없으며, 『주서』에서 처음 나타난다. 『주서』·『복사』·『수서』에서 보면 帶制에서 紫帶가 대색 중에서 가장 고위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서』·『복사』의 기록만으로는 7품만이 자대를 맨 것인지 그 이상이 자대를 맨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수서』에는 1품에서 7품까지라고 그 범위를 확실하게 기재하고 있다. 1품에서 6품까지는 銀花의 관식이 있기 때문에 帶의 색이 소홀히 생각되었고,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소략하게 기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색은 『수서』에 따라 1품에서 7품까지 모두 자색을 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색은 『수서』에 따라 1품에서 7품까지 모두 자색을 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서』 당시의 백제에서 그 전에 정하지 않았던 1품에서 6품까지의 대색을 처음으로 정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본다. 8품 이하 관위의 대색은 세 사서에서 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관위에 따라 纁·赤·靑·黃·白帶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주서』 백제전의 기록은 실제의 견문에 의거한 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전 사서의 답습이며 개인 저술성을 띠는 남북조시대 편찬 사서들보다 새로운 뿐만 아니라 동시대적인 지식에 의하여 唐代 史館의 史官들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사서인 것이다.³⁰⁾ 그렇다고 본다면 백제의 관등에 따른 帶色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한 사서인 『주서』 편찬 당시 관위에 따라 帶의 색으로 구분했던 공복제도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백제 사신도에서 청복에 황대를 맨 것을 확인할 수 있어 6세기 전반기에 대제가 존재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제에 관하여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언급되어 있는 바가 없다.

이상으로 살펴본 백제 공복제도에 의하면 백제는 고이왕대(270)에 관인의 고위를 따져 복색을 정함으로써 服制가 가장 먼저 정해지고, 『주서』의 북주(557-581) 당시 이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대의 색을 정하고 고위 관인에게는 은화관식을 꾀도록 하여 冠制와 帶制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대의 색에 따라 관모의 색을 정하는 관제가 더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복제도에서 관등에 따라 대색이 상세하게 구분된 것은 백제 관등제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관위에 따른 관모색의 차이는 고구려가 『구당서』에서 비롯된 것에³¹⁾ 비하여 백제는 『수서』에 기록되어 있어 백제가 먼저 관모의 색도 정하여 일찍부터 공복제도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공복의 형태

『주서』에 의하면 백제 남자 복식의 기본구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저고리와 바지이다. 여기서 남자 복식의 기본 상의가 저고리라고 볼 때 관인들의 복장이 저고리만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에 포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관인들의 복식은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지배계급의 표시로서 저고리만이 아닌 겉옷인 포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라는 것이 예를 갖추어 입을 의복이란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공복제도의 의복으로는 포를 입었을 것이다. 이는 백제 사신도의 사신이 포를 입고 있는 모습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관인들이 입은 포의 형태는 사신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의 단령 형태가 아닌 고유의 형태인 直領이며, 右衽으로 느슨하게 여며졌고 무릎을 덮는 정도의 길이였을 것이다. 장식으로는 백제 사신도에서는 앞단 장식선이 확인되지 않으나 백제 금동대향로의 인물상 중 포를 착용한 예를 살펴보면, 앞단에도 장식선이 대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관인의 포에는 깃, 앞단, 수구, 밑단 부분에 선이 대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를 매었는데 관

위에 따라 帶의 색을 달리하였을 것이다.

대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구려가 흰색의 가죽대를 사용했었던 반면에 백제의 대는 그 색의 다양성과 사신도의 대를 맨 모습으로 추정해 보면 직물을 대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출토물 중 과대에 직물편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³²⁾ 대에 다양한 색상의 견직물을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인들이 입었던 바지는 통이 넓은 大口袴로 그 형태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자상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발목부분을 여미는 형태의 바지와 다른 것은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이 입고 있는 아랫단을 여미지 않은 바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양직공도」, 모사본인 「왕회도」와 「번객입조도」에 등장하는 고구려 사신의 바지도 아랫단을 여미지 않은 형태이며, 신라 사신도 통이 좁기는 하지만 구성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에서 6세기 초기까지 이와 같은 아랫단을 여미지 않은 형태의 바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신도가 6세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무령왕릉 동자상도 6세기대의 모습으로, 당시 밑단을 여민 형태와 여미지 않은 형태가 공존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관인은 밑단을 여미지 않은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바지를 놓고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추정해본다면, 원래의 바지 형태는 밑을 오므려 입는 형태였는데 중국의 영향으로 寬大함을 표현하게 되면서 밑단에 장식선 처리를 하여 그대로 늘어뜨려 입는 형태로 일부 변화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대한 형태의 의복을 받아들인 것은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유행했던 도교사상의 영향을 함께 받았던 결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 송산리와 능산리 고분군에서 四神圖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³³⁾ 백제에서 도교의 성행은 6세기 이후로서, 관복제도가 처음 제정된 고이왕 27년에 관인이 입었던 바지는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기 이전이며 밑단을 여민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冠의 형태는 고구려의 절풍과 같은 弁形의 관모로 6품 이상은 품위에 따라 다른 화문형태의 은화

관식을 꽃아 위엄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관인들의 관은 능산리 고분에서 관식과 같이 출토된 직물 조각에서 확인된 羅 조각과 왕이 '烏羅冠'을 썼던 것에서 羅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서』의 기록에 의하면 대색과 같이 冠色을 정한 것으로 보아 각 관위의 대색과 동일한 색의 羅冠을 착용하였을 것이다.

공복을 입고 있는 백제 사신은 靴를 신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이왕대 기사에서 왕은 履를 신고 있었으며,³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제 신발의 형태도 履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靴를 신고 있는 사신은 관인으로 履를 신었던 왕과 신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신발 형태를 신었을 가능성과 무령왕 이후 공복제도에서 신발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상황에 따른 다른 형태의 신을 고려하면 나라 안에서 공무시에는 履를 신고 장거리 원정이나 말을 탈 경우에는 靴를 신었을 것이며, 시기에 따른 신발의 변화를 고려하면 履형태에서 靴형태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VI. 결론

본 연구는 백제 복식관련 문헌 기록과 그간 진행된 발굴 결과를 토대로 백제의 공복제도의 내용과 시행시기, 공복의 형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제 공복제도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서인 『三國史記』와 중국의 사서인 『周書』·『北史』·『隋書』·『舊唐書』·『新唐書』 등에서 그 기록을 통해 衣制, 冠制, 帶制의 세 가지로 구분됨이 확인되었다. 공복제도의 내용에서 의제는 겉옷인 포의 색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관위에 따라 紫·緋·靑의 차등을 두었고,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모든 관인들이 붉은 색인 緋 또는 絳을 입었다고 하였다. 관제는 위의 모든 사서에 '은화관식'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다른 사서에서 6품이상에서 은화관식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구당서』와 『신당서』는 모든 관인이 은화관식을 꽃았다고 하였다. 대제

는 『주서』·『복사』·『수서』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관위에 따라 皂·赤·靑·黃·白帶를 띠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백제 공복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衣制는 가장 먼저 시행된 것으로 『삼국사기』 고이왕대에 관위에 따라 紫·緋·靑으로 의복색을 구분하여 제정되었다. 백제 사신의 복장은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는 회화로 『주서』의 북주대(557-581) 이전부터 백제 공복제도의 衣制가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색을 구분하여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의하면 7세기 백제 공복제도의 의제는 복색이 붉은색으로 통일되어 공복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백제의 冠制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이왕대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은화관식의 출토물이 6세기 중엽 이후의 무덤양식에서 확인되어 『주서』의 기록이 북주 당시의 백제 공복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무령왕릉보다는 후이면서 북주 북주 이전인 6세기 전반기에는 6품 이상의 고위 관인만 은화관식을 꽂는 관제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수서』의 대색과 같이 관모의 색을 따른다는 관제의 내용은 아직까지 출토물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수서』의 수나라 당시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7세기 이후에는 은화관식의 출토물이 보이지 않고 있어 관제에 대해 다른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백제 공복제도의 대제가 대하여는 『주서』에서 처음 나타나며 백제 사신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북주 이전의 6세기대에 백제는 帶의 색으로 그 관위를 구분하던 공복제도를 제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공복의 형태는 저고리와 바지위에 지배계급의 표시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포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관인들이 입었던 바지의 형태는 원래의 바지 형태는 밑을 오므려 입는 형태였는데 중국의 영향으로 寬大함을 표현하게 되면서 밑단에 장식선 처리를 하여 그대로 늘어뜨려 입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포의 형태는 直領右衽으로 무릎을 덮

는 정도의 길이이며 장식으로는 깃, 앞단, 수구, 밑단 부분에 선이 대어져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관위에 따라 색이 다른 견직물이 대어진 대를 매었을 것이다. 대제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고이왕이 '素皮帶'를 띠었던 것과 같이 천연 가죽 띠를 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복 착용시 관인은 백제 사신과 같은 검은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나라 안에서 공무시에는 履를 신고, 장거리 원정이나 말을 탈 경우에는 靴를 신었으며, 시기에 따라 履형태에서 靴형태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冠은 弁形으로 6품 이상은 품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은화관식을 꽂았고, 『수서』의 기록처럼 대색과 동일한 색의 羅冠을 썼을 것이다. 은화관식의 출토물에 의하면 그 문양의 형태가 초화문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세부적인 형태에 차이를 보여 관위에 따른 은화관식 형태의 차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상으로 백제 공복제도의 내용과 그 시행시기를 살펴본 결과 백제는 3세기대에 자·비·청 3색으로 관위의 서열을 정하였고, 6세기대에는 관위에 따라 관모의 색과 대의 색도 정한 것으로 보아 그 색상의 활용 또는 응용력이 고대 삼국 중 가장 일찍부터 우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제의 공복제도는 6세기대에 매우 세분되었으나, 7세기대에는 복색이 붉은색으로 통일되고 관식도 모든 계급의 관인이 은화관식을 꽂아 공복제도가 단순하게 변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인에 대한 복색의 규제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관위의 구분보다는 관인과 일반인과의 구분을 중요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백제 공복제도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자료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고학적 발굴이 크게 확산되어 숨겨진 백제 문화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자료의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새롭게 출토된 백제 출토물의 고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미처 확인되지 못한 백제 공복제도의 실상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려 인종때 김부식이 중국 사마천의 「사기」를 본떠 고기(古記)·유적(遺籍) 또는 중국의 제사(諸史)에서 뽑아 편찬 간행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역사책이다.
- 2) 신라시대에 고려 34대 공양왕에 이르기까지의 1400년 동안의 사실을 시대 순으로 적은 역사책이다. 조선조 9대 성종 15년(1584)에 서거정 등이 중국의 「자치통감」을 본떠 엮은 것으로 단군·기자·위만의 古三鮮 및 漢四郡·二府·三韓 등이 外記로 하여 책머리에 실어 있다.
- 3) 조선 숙종 때 안정복이 지은 편년체 사서로 箕子 때부터 고려 말까지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상고 때부터 대한 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책으로 최초의 편찬은 영조 46년(1770)에 홍봉한 등이 편찬했다.
- 5)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二十七年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 6) 李基白 (1967). 韓國史新論, 일조각, p. 14.
- 7)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제2 개정판). 교문사, 도. 1-5.
- 8) 심연옥 (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 292.
- 9) 『釋名』
袍丈夫著 下至跗者也 袍苞也 苞內衣也.
- 10) 이경자 (1991). 韓國服飾史論 (제4 개정판). 일지사, p. 110.
- 11) 言語衣服略同高麗 行不張拱 拜不申足 以帽爲冠襦曰複衫 袴曰袴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
- 12) 『梁書』卷54 諸夷傳 百濟
今言語服章 略與高麗同 行不張拱 拜不申足 異呼 帽曰冠 襦曰複衫 袴曰袴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云.
- 13) 洪思俊 (1981). 앞의 논문, p. 167.
- 14)
- 15) 安承周, 李南奭 (1988). 論山六谷里 百濟古墳發掘調查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1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 186.
- 17) 洪思俊 (1968).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考古美術, 9(1), pp. 363-364.
- 1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p. 208-210.
- 1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pp. 370-372.
- 20)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27年, 28年條 參照.
- 2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도. 99.
- 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삼도. 143.
- 2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p. 178-309.
- 2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pp. 370-371.
- 25) 이남석 (1990). 百濟 冠制와 冠飾. 백제문화. 백제연구, 20, p. 15.
- 26) 俞元載 (1988). 『周書』百濟傳 研究. 백제연구, 19, pp. 237-262.
- 27) 俞元載, 위의 논문, p. 186.
- 2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法興王 7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法興王制 自太八角干至大阿滄紫衣 阿滄至級滄緋衣 並牙笏 大奈麻 奈麻青衣 大舍至先沮 知黃衣, 伊滄·迺滄錦冠 波珍滄·大阿滄矜荷緋冠 上堂大奈麻·赤位大舍組纓.
- 29)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
新羅之初 衣服之制 不可考色至第二十三葉法興王 始定六部人服色 尊卑之制 猶是夷俗.
- 30) 俞元載, 앞의 논문, p. 245.
- 31)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高麗
官文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 及金銀爲飾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韋履.
- 32) 김상용 (1977). 車騎·鎧帶에 쓰이던 古代 織物. 직물검사, 5(1), pp. 13-16.
- 33)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충남대학교 (1993). 고대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인식. 충남대 백제연구소, p. 94.
- 34)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二十八年 春正月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革履 坐南堂聽事